

#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06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0. 2. 고성군수  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2.  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0. 20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인구청년추진단장 직무대리 정혜진)

#### 가. 제정이유

고성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3) 도민연금 운영(안 제4조)
- 4) 예산지원(안 제5조)
- 5) 정보제공 및 처리, 위임 및 위탁(안 제6조~제7조)
- 6) 준용(안 제8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2) 예산조치: 2026년 당초예산 편성예정
- 3) 합 의
 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- 개선 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8872(2025. 7. 29.)호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263호

- 예고기간: 2025. 7. 21.~2025. 8. 11.(21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제출 1건

입법 예고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	<input type="checkbox"/> 예산에 관한 조항 추가 - 가입자에게 도민연금 지원금을 고성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의견 반영 - 기존 조례안만으로도 도민연금 운영을 위한 지원금의 일부를 고성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나, 조례의 명확성과 세부적 명시를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⇒ 제5조(예산지원) 추가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경상남도 도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과 적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있는 도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경상남도 주도의 개인연금 지원제도로,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재정 안정성, 지원 대상의 형평성, 군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 등 운영 전반에 촘촘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▶ 주요 검토 내용(안 제4조)

- (가입대상) 도내 40~54세 미만 일정 소득 이하인 자(2026년 1만 명)
  - ※ 2025년 기준중위소득 130% 준용,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
- (지원내용) 개인형 IRP 활용, 연 80,000원당 20,000원 지원(도 50%, 군 50%)
  - ※ 지원금 = (연간납입액 / 80,000원) × 20,000원  
[예 (960,000원/80,000원) × 20,000원 = 240,000원]
- (예산규모) 2026년 14,160,000원, 매년 가입자 확대에 매년 부담금 증가,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
  - ※ 경상남도 기금 설치 운영
  - ※ 산출내역 = (2026년 고성군 배정) 118명 × (군비) 10,000원 × 12개월
  - ※ 가입자 기준에게 최대 120개월(10년간), 2,400,000원(연간 240,000원) 지원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0. 2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